

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2523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9.

발 의 자 : 김태선 · 이병진 · 서미화  
장철민 · 윤후덕 · 장경태  
이용우 · 어기구 · 박 정  
한병도 · 한준호 · 서영교  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행정기본법」은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예외적으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현행법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사유와 관련하여 「행정기본법」 보다 협소하게 규정하여,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불명확하므로 과징금 납부와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.

이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「행정기본법」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28조).



##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「행정기본법」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12개월의 범위에서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.

1.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
2. 강제집행, 경매의 개시, 파산선고, 법인의 해산,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「행정기본법」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, 분할 납부 등에
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8조(과징금) ① ~ ⑤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8조(과징금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</p> <p>2.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</p> <p>3.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</p> <p>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</p> | <p>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「행정기본법」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12개월의 범위에서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</p> |

수 있다.

1.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 
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 
아니하였을 때
2. 강제집행, 경매의 개시, 파산  
선고, 법인의 해산, 국세 또는  
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 
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 
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3.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 
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

⑧ 제6항 및 제7항에 의한 과징  
금 납부기한의 연장, 분할납부  
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  
리령으로 정한다.

에 징수할 수 있다.

1.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  
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  
은 경우
2. 강제집행, 경매의 개시, 파산  
선고, 법인의 해산, 국세 또는  
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 
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 
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 
경우
3. 「행정기본법」 제29조 각  
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  
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 
고 인정되는 경우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 
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  
우

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과징  
금 납부기한의 연기, 분할 납부  
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  
리령으로 정한다.